

2015 summer

건강한 금융생활정보가이드



범죄의 온상인 대포통장, 위험합니다

- 대포통장의 정의
- 통장을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의 위험성
- 내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대포통장의 정의

보이스피싱, 대출빙자사기 등 모든 금융사기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사기범들이 신분을 감추고,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평범한 통장도 다른 사람에게 대여되거나 양도되어 사용된다면 대포통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장 명의인인 여러분에게도 다양한 금융거래불이익이 따르게 되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이란

대포통장¹⁾이란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을 뜻합니다. 통장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르기 때문에 금융경로의 추적을 피할 수 있어 각종 범죄에서 사기 피해자금을 가로채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대출빙자사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따라서 각종 금융범죄의 예방을 위해서 대포통장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대포통장

-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
- 금융경로의 추적을 피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의 사기자금 수취 수단으로 사용

1 대포통장에서 ‘통장’의 의미는 사전적 의미를 넘어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기범이 대포통장을 획득하는 방법



▶ 통장 매입

인터넷 게시판, 가출 카페 등에 ‘개인·법인통장 매매합니다.’, ‘통장 사드립니다. 남녀노소 불문. 당일 입금’이라는 대포통장 매입 문구 등을 게시하여 각종 통장 및 체크(현금)카드 등을 매입

※ 일부 인터넷 가출 카페의 경우 중개수수료를 받고 대포통장 매도자를 피싱사기 조직에 알선하는 경우도 있음.

▶ 통장 가로채기

저리대출이나 취업 등을 빙자하여 ‘통장 및 체크(현금)카드를 보내면 당장 대출해 주겠다.’, ‘우리회사에 취업을 하려면 본인의 금융 거래 확인이 필요하다.’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통장 및 체크(현금)카드를 가로챈.

▶ 개인정보 매매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문자 메시지 등에 ‘각종 DB를 판매합니다.’라고 광고 (개인신용정보 불법 판매)하는 곳에서 개인신용정보를 매입하고, 매입한 정보로 대포통장을 개설하거나 대출빙자사기 및 피싱사기 등 각종 범죄에 악용함.

2. 통장을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의 위험성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통장을 대여해 주거나 사고파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다른 사람의 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사기범일 가능성이 높으며, 타인에게 넘겨진 대부분의 통장들은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이용됩니다. 이 경우 사기범에 대한 처벌과는 별도로 대포통장 명의인에게도 민·형사상 책임과 처벌, 다양한 금융 거래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따라서 서랍 속의 평범한 내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순간, 나에게 범죄자 기록까지 남을 수 있음을 명심하고 통장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대포통장 명의인의 민사책임

대포통장 거래 시 법원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포통장 명의인은 피해자들에 대해 민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판례 | 서울동부지법 2011.3.28. 선고, 사건 2010가단50237 [부당 이득금]

판결 요지 | 대포통장 명의인이 “보이스피싱”의 범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해당 통장을 양도함으로써 그와 같은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이므로, 대포통장 명의인은 민법 제760조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70%)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대포통장 거래에 대한 형사처벌

대포통장 거래 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제3항 및 제49조(벌칙) 제4항에 근거하여 형사처벌을 합니다. 또한, 2015년 1월 20일에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면서 대가의 수수가 없더라도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고, 대포통장을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까지도 금지되었습니다.



불법행위 | 1. 통장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통장을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통장을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4. 통장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위 1~4번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한 다양한 금융 거래 불이익

새로운 계좌개설의 제한

- 대포통장의 명의인으로 은행 전산망에 등록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향후 1년간 전 금융회사에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이 불가능
-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금융 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객관적인 증명서 제출 등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함.

대포통장 명의인을 전자금융 거래 제한 대상으로 지정

- 범죄에 이용된 계좌를 지급정지
- 대포통장 명의인은 전자금융 거래 제한 대상으로 지정
- 동 명의인의 다른 금융회사 계좌: 창구거래만 가능, 현금카드·이체 및 송금·CD/ATM기 거래 등의 전자금융 거래 불가능

금융 거래 시 과거 대포통장 명의인 이력 반영

- 과거 대포통장 명의인 이력이 있는 경우 동 정보가 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취급 심사 등의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참고자료로 활용
- 금융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다양한 직·간접적인 불이익이 따름.





1. 사기범이 대포통장을 획득하는 방법

H씨(30대, 남)는 ‘○○금융’ 팀장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대출가능 여부를 문의했습니다. 사기범은 피해자의 신용등급이 낮고 대출건수가 많아 대출이 곤란하다며 사용하지 않는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금융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현혹했습니다. H씨는 통장과 체크카드를 사기범에게 보낸 뒤 연락을 기다렸으나 사기범들은 잠적하였고, 이를 후 본인의 다른 체크카드를 사용하려던 중 자신이 양도한 통장이 대출빙자사기에 이용되어 거래가 정지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H씨는 이후 전자금융 거래 제한 조치로 인해 금융생활에 큰 불편을 겪었고,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제기한 대포통장 관련 민사소송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2.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통장과 체크(현금)카드를 가로챈 사례

B씨(20대, 남)는 군대를 전역해 직장을 구하던 중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한 건설회사의 전기보조 일을 찾게 되었습니다. 건설회사 과장은 “중간부터 일을 해도 월급이 다 나가 회사가 손해를 볼 수 있으니 통장을 한 달만 관리하겠다.”라고 제안했습니다. B씨는 일을 구했다는 기쁜마음에 과장이 요구한 통장과 카드, 카드 비밀번호 등을 모두 넘겼습니다. 하지만 과장은 그 다음날부터 전화를 받지 않았고, 2주 뒤 경찰서에서 ‘통장 양도 행위’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B씨는 이후 신규 예금계좌 개설 제한, 전자금융 거래 제한 등으로 금융생활을 하는 데 아주 큰 불편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3. 내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 통장과 체크(현금)카드, 계좌 비밀번호를 절대 대여하거나 양도하면 안됩니다.

통장과 체크(현금)카드, 계좌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스스로 본인을 범죄에 연루되도록 만드는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통장이나 체크(현금)카드 등 실물을 넘기지 않더라도 신분증이나 통장 사본, 계좌 비밀번호 등의 금융거래정보를 넘겨주는 것만으로도 대포통장 명의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통장 등을 다른 사람에게 건넨 경우 즉시 통장을 발급한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또는 해지 신청을 하고,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 쓰는 통장은 정리하고 평소에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사기범들은 ‘통장 양도 시 대가 지급’, ‘집에서 안 쓰는 통장을 빌려주면 거래기록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려주거나 대출 한도를 늘려준다.’는 식으로 유혹하여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통장을 대여·양도하도록 유도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통장(계좌)을 정리하여 분실 및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이고, 사용하는 통장은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 다른 사람에게 통장을 양도하거나 금융거래정보를 알려준 경우에는 즉시 지급정지나 계좌 해지를 요청합니다

통장이나 체크(현금)카드를 분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한 경우, 금융거래정보(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를 알려준 경우에는 즉시 발급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나 계좌 해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의 전달로 추가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신분증 등을 재발급 받고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 안 쓰는 통장은 정리하고 평소에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사기범들은 ‘통장 양도 시 대가 지급’, ‘집에서 안 쓰는 통장을 빌려주면 거래기록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려주거나 대출 한도를 늘려준다.’는 식으로 유혹하여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통장을 대여·양도하도록 유도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통장(계좌)을 정리하여 분실 및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이고, 사용하는 통장은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 불법행위를 발견했을 때에는 반드시 신고합니다.

인터넷 등에서 통장 매매 광고나 모집책을 발견하는 경우에 경찰청(TEL 112)이나 금융감독원(TEL 1332)으로 신고하여 금융범죄를 예방하도록 합니다.



Q. 낯선 사람에게 내 통장과 체크(현금)카드, 계좌 비밀번호를 건넨 경우 어떻게 해야 하죠?

A. 그런 경우, 즉시 해당 계좌의 금융회사 콜센터나 경찰청(TEL 112)으로 연락해서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경찰에 해당 사실을 신고를 합니다. 사후적인 안전조치는 금융회사 직원에게 안내 받으세요.

Q. 내 통장이 금융사기에 이용되어서 전자금융 거래 제한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자금융 거래 제한이 종료될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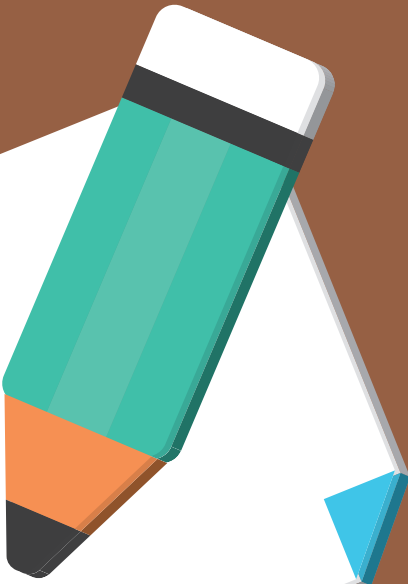
A. 피해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환급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특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급절차가 모두 종료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환급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검찰·법원에서 발급한 최종 처분결과에 관한 문서 등을 이용하여 금융회사의확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금융소비자, 이렇게 행동하세요.

-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금융생활 습관
- 금융사기 피해 시 대처 요령



금융사기예방을 위한 금융생활 습관



-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의 이체를 요구하거나,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하지 않음을 명심하세요.

사기범이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든, 또는 범죄사건 연루, 개인정보 유출 등의 이유로 접근하는 경우든 결국에는 금전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낯선 사람으로부터 이러한 요구를 받을 경우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해당 기관의 공신력 있는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반드시 사실 여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대출광고를 보고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한 대출 광고는 사기업체의 대출 광고일 확률이 높습니다. 대출 알선 문자나 전화, 광고물에 현혹되지 말고 대출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정식 금융회사를 통해 상담받아야 합니다. 정식 등록된 대출업체인지 여부는 금융감독원이나 한국대부금융협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 입금계좌지정제를 이용하세요.**

고객이 사전에 지정하지 않은 계좌에 대해서는 소액만 이체를 허용하는 서비스로서, 미지정계좌로 이체 시 최대 100만 원(1일 누적 기준)한도 내에서만 송금이 가능합니다.

● **보안카드보다 안전성이 높은 보안매체(OTP)를 적극 이용하세요.**

금융 거래 시 OTP¹⁾ 사용을 권장합니다. 사기범에게 속아 보안카드번호 전부를 알려주는 경우 사기범이 무제한으로 동 정보를 이용해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반면, OTP는 이러한 무제한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OTP의 종류**

토큰 1형

OTP 기기에 버튼이 없고, OTP값이 자동으로 출력되며, 1분에 한 번씩 자동으로 값이 변경됩니다.



토큰 2형

OTP 기기에 있는 키패드에 4자리의 PIN 번호를 입력하면 OTP값이 화면에 출력됩니다.



토큰 3형

OTP 기기에 있는 전원 버튼을 누르면 OTP값이 화면에 출력됩니다.



카드형

카드 형태로서 생성 버튼을 누르면 OTP값이 화면에 출력됩니다.



❁ 자료출처 : 금융보안연구원

1)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One-Time Password)

전자금융 거래 시마다 고정된 비밀번호 대신 새롭게 생성된 비밀번호로 인증하는 보다 안전한 전자금융 거래 방식

●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나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이메일·문자 메시지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세요.**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나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받았을 때, 해당 파일이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나 악성 앱에 감염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들 악성코드(악성앱)는 금융 거래 시 파밍과 피싱사이트 피해, 메모리 해킹 등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합니다. 만약 클릭한 경우 컴퓨터 및 휴대전화 A/S센터를 통해 반드시 치료하기 바랍니다.

● **타인에게 절대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알려 주지 마세요.**

주민등록번호, 주소, 통장이나 신분증 사본, 계좌번호 및 보안카드번호, 문자 메시지 인증번호 등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는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입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통장 사본, 휴대전화 등을 대출권유업체에게 건네주는 경우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으로 이용되어 본인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를 이용하면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이용된 내역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의 보안강화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세요.**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나에게 알맞은, 안전거래를 위한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고 적극 이용하기 바랍니다.



●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에 가입하세요.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거나 인터넷뱅킹으로 300만 원 이상(1일 누적) 이체 시 ① 미리 지정된 단말기(컴퓨터, 스마트폰 등)를 이용하게 하거나, ② 추가 본인 확인(SMS인증, 전화확인 등)을 하여 본인 인증을 강화하는 서비스로 거래은행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기범이 타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부정 이체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평소 악성코드 탐지 및 제거를 생활화하세요

본인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악성코드에 감염됐거나 의심되는 증상을 발견한 즉시 한국인터넷진흥원(TEL 118)에 문의하거나, 컴퓨터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악성코드를 제거해야 합니다. 특히 평소 인터넷뱅킹 등을 자주 이용하는 경우 악성코드 탐지 및 제거를 주기적으로 수행하여 보안 점검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계좌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사진 등 금융거래정보를 저장해 두지 마세요.

전자기기의 분실이나 메모리 해킹 등이 발생했을 때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되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통장의 이체 및 인출 한도는 내게 필요한 만큼만 유지하세요.

나의 금융생활을 잘 고려해서 꼭 필요한 수준으로 이체 및 인출 한도를 설정해 놓으면, 금융사기 발생 시 사기범들이 자유롭게 피해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는 것을 막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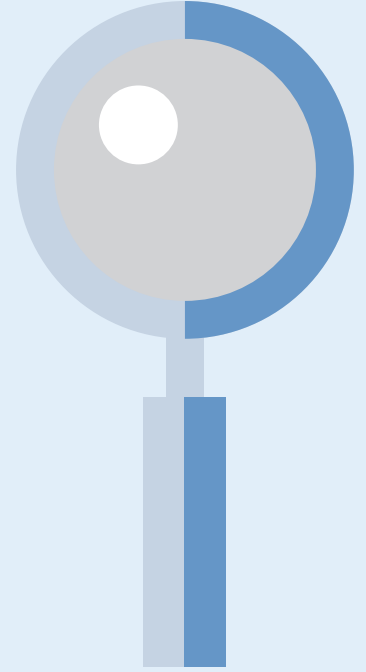
❁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알면 힘이 되는 소비자권익보호 7 계 명

◦ 보험상품 관련



보험상품 관련



알면 힘이 되는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보험상품 관련

1 중요내용을 설명듣고 약관·청약서 부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청약시 보험회사로부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들을 수 있고, 청약 후에는 약관 및 청약서부분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보험상품 비교 가능
(생보협회: www.klia.or.kr TEL 02-2262-6600, 손보협회: www.knia.or.kr TEL 02-3702-8500)

2 청약 후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 할 권리가 있습니다.

통신판매는 30일 이내 철회 가능, 진단·단체·1년미만계약은 철회 불가
(‘14.7.15.부터는 증권받은 후 15일 이내 철회 가능, 다만 청약 후 30일 초과시 불가)

3 특정한 경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약관·청약서부분을 주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하지 않은 경우 청약 후 3개월 이내 취소 가능

4 보험료 연체로 해지시 2년 이내에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연체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하는 경우 해지된 계약의 부활 가능(부활 불가 사유 등 세부 내용은 약관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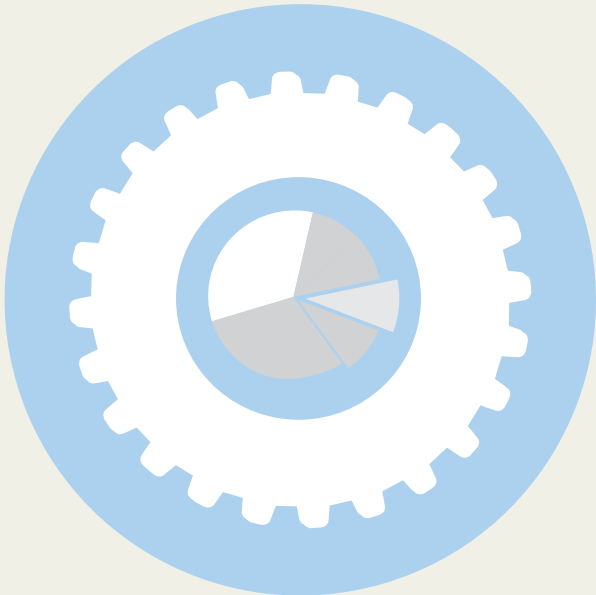


5 자동이체, 고액계약 등의 경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고액계약, 장기유지, 건강체, 다자녀 등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음 (다만, 회사별·상품별로 다르므로 계약시 확인 필요)

6 중도 해지시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시 보장보험료·사업비 등으로 납입보험료 총액보다 적거나 전혀 없을 수 있으므로 계약시 해지환급금 관련 사항을 자세히 확인 필요



7 청약서상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청약서상 질문사항에 대해 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렸더라도 본인이 서면으로 정확히 알리지 않거나 허위·부실하게 알린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음

* 세부내용은 상품별로 다를 수 있으니, 설명서 등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